

case  
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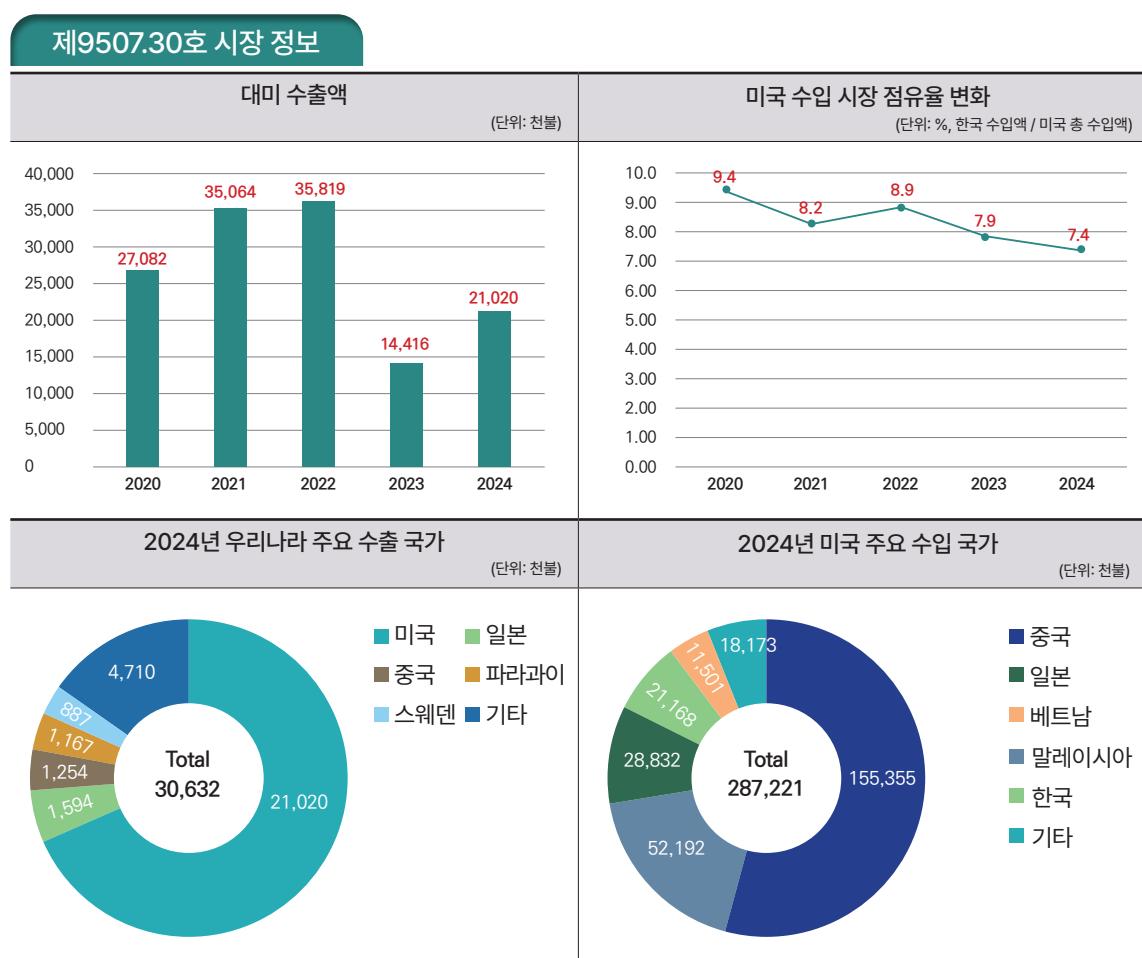
## 낚싯대-릴 세트

### 요약

사례명	낚싯대-릴 세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사례번호	NY N310250 (2020.03.17.)
사실관계	한국산 릴을 중국으로 수입한 후 중국에서 생산된 낚싯대와 조립하여 완성된 낚싯대-릴 세트를 소매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
쟁점 및 판정	<p>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</p> <p>한국에서 수입한 한국산 릴을 중국에서 생산된 낚싯대와 결합하는 것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여 한국산 릴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, 원산지표시 목적상 구성품별로 각각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함</p>
근거법령	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

I 품목개요

품목정보		
HS Code	제9507.30호	
세율	한국 기본세율	8%
	미국 기본세율	3.9~9.2% or 24¢ each
	한-미 FTA 협정세율	0%
한-미 FTA 원산지결정기준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	



❖ 자료: K-stat

## II 판정사례

### 사례명 [낚싯대-릴 세트]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사례번호 NY N310250 (2020.03.17.)

#### 사실관계

요청자 Pure Fishing, Inc.

	제품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낚싯대-릴 세트</li> </ul>
제품	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낚싯대 (중국산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리섬유 또는 흑연, 스테인리스강, 티타늄, 세라믹, 알루미늄, 플라스틱, EVE 품, 코르크 등으로 구성</li> </ul> </li> <li>• 릴 (한국산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플라스틱, 알루미늄, 스테인리스강, 아연, 마그네슘, 황동 등으로 구성</li> </ul> </li> </ul>
	완제품 HTSU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9507.30</li> </ul>

#### 제조공정



01

한국에서  
릴 제작



02

중국으로 수출



03

중국산 낚싯대와  
함께 조립



04

미국 수출

#### 상세공정

1. 한국에서 릴 제작 후 중국 수출
2. 중국에서 중국산 낚싯대와 함께 조립하여 낚싯대-릴 세트로 완성
3.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

**쟁점사항**

- ✓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**관련 법령 및 분석****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****관련 법령 검토**

- ▣ 『19 C.F.R. § 134.1(b)』에 따르면,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, 생산, 또는 재배된 국기를 의미하며,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,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이 발생해야 함
-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 여부
  - 다만, 물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한 제조 또는 결합 공정만 거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

❖ 참고 판례: *U.S. v. Gibson-Thomsen CO, 27 C.C.P.A. 267 (1940)*

-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전체적인 정황(totality of the circumstances)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, 이때, 각 구성 부품의 원산지, 특정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 정도, 해당 가공이 해당 물품에 새로운 명칭, 성질, 용도를 부여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사항임

**판정 결과**

- ▣ 한국에서 수입한 한국산 릴을 중국에서 생산된 낚싯대와 결합하는 것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여 한국산 릴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, 원산지표시 목적상 구성품별로 각각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함

**기타 의견**

- ▣ 해당 제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안한 소매 포장 상의 문구인 “Reels Made in Korea, Rods Made in China”는 동일한 크기의 글꼴로 표시되는 경우 적절한 원산지 표기로 인정됨

**결론**

- ✓ 최종 제품인 낚싯대-릴 세트의 원산지는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, 이에 따라 릴의 원산지는 한국, 낚싯대의 원산지는 중국임

III **시사점**

-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, 타국산 세트 구성품을 자국에서 생산한 다른 구성품과 단순히 결합하고 소매 포장하는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



## 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10250 (2020.03.17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10250>
- CBP 19 C.F.R. § 134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34>
- 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 (1940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1707/united-states-v-gibson-thomsen-co/?q=United+States+v.+Gibson-Thomsen+Co>